

의안번호	2200415
의 퇴 인	김영배 의원
회 답 일	2024. 6.27.
추계번호	24D0731

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투표권행사의 보장)	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,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5조 (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)	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두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	의무규정
3	안 제8조(투표권)	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음	의무규정
4	안 제15조(투표인명부 작성 등)	「공직선거법」에 준하여 거소투표신고 ¹⁾ 또는 선상투표신고 ²⁾ 를 할 수 있도록 하며,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함	의무규정 재량규정
5	안 제19조 (국민투표공보의 작성)	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 외에 시각장애투표인을 위한 국민투표공보를 따로 작성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32조 (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)	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,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어통역을 할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7	안 제38조(투표시간)	사전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함	의무규정
8	안 제51조 (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), 제53조(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), 제56조(재외투표소의 투표), 제57조(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)	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마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하며, 재외투표인명부 작성, 재외투표소 설치, 재외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야 함	의무규정 재량규정
9	안 제85조(질병·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)	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, 투표관리관, 사전투표관리관,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, 투표 및 개표사무원이 국민투표업무로 인하여 질병·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함	의무규정
10	안 제86조(전산조직에 의한 투표·개표)	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,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
1) 개정안에서 “거소투표신고”는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「공직선거법」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투표권행사의 보장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조(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)		
3	안 제8조(투표권)		
4	안 제15조(투표인명부 작성 등)		
5	안 제19조(국민투표공보의 작성)		
6	안 제32조(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)		
7	안 제38조(투표시간)		
8	안 제51조(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), 제53조(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), 제56조(재외투표소의 투표), 제57조(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)		
9	안 제85조(질병·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)		
10	안 제86조(전산조직에 의한 투표·개표)		

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5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·시·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함

- 2) 개정안에서 “선상투표신고”는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·시·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면[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(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를 포함한다)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]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함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을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여 18세가 포함되며, 재외투표, 거소투표, 선상투표, 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하고,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,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도입, 투표관리관 등 사망 시 보상금 지급, 투표 및 개표 사무의 전산화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임
-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부담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투표 실시횟수를 예측하고 투표관리비용을 추정하여야 하는데, 현 시점에서 향후 국민투표 실시횟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
 - 국민투표는 「헌법」 제72조에 따른 외교·국방·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「헌법」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실시함
 - 국민투표는 1962년부터 1987년까지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6번(1962년, 1969년, 1972년, 1975년, 1980년, 1987년) 실시하였으나, 최근 30년 동안은 실시된 적이 없음

[표 1] 역대 국민투표 현황

시행일	인구수	투표인수	투표수 (투표율)	찬성수 (찬성률)	사유
1962.12.17	26,278,025	12,412,798	10,585,998 (85.3%)	8,339,333 (78.8%)	헌법개정
1969.10.17	30,481,835	15,048,925	11,604,038 (77.1%)	7,553,655 (65.1%)	헌법개정
1972.11.21	31,536,109	15,676,395	14,410,714 (91.9%)	13,186,559 (91.5%)	헌법개정
1975.02.12	33,290,921	16,788,839	13,404,245 (79.8%)	9,800,201 (73.1%)	헌법개정 및 정부신임
1980.10.22	37,589,091	20,373,869	19,453,926 (95.5%)	17,829,354 (91.6%)	헌법개정
1987.10.2	41,338,959	25,619,648	20,028,672 (78.2%)	18,640,625 (93.1%)	헌법개정

자료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- ☐ 따라서 개정안은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